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동차정비업자가 이용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신설〉

■ 김병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37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목 차

□ 김병기의원 대표발의(제2201437호)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자동차정비업자가 이용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신설(안 제 57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 신설)	3

□ 김병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37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병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5.
3. 회 부 일 : 2024. 7.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정비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수리비를 보험사가 부담하는 사고차 수리의 특성이나 이용자의 직영서비스센터 선호 경향 등으로 인해 직영서비스센터에 과도하게 일감이 몰리더라도 해당 자동차정비업자는 이용자에게 중소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도록 권장하는 행위를 할 수 없어 고객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소 정비업체와의 일감나누기 또한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모품 교환 등과 같은 단순정비 또는 판금·도장 작업의 경

우 가맹본부나 대기업이 가맹점이나 중소 정비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일감나누기를 통한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 신설).

Ⅲ. 검토의견

1. 자동차정비업자가 이용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신설(안 제57조

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자동차정비업자가 소모품 교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정비 요청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1)에 따른 가맹본부가 같은 법 제2조제3호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매출향상을 위하여 가맹점을 이용하도록 권유하는 경우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3)에 따른 상생협력을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 12. (생략)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 12. (생략)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受託企業)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

위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이용하도록 권유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단서 신설> <신설> <신설>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다만, 자동차정비업자가 소모품 교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정비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매출향상을 위하여 가맹점을 이용하도록 권유하는 경우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이용하도록 권유하는 경우

의 활동을 말한다.

4. ~ 13. (생략)

현행	개정안
5. (생략) ② · ③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57조제1항제4호⁴⁾는 자동차관리사업자⁵⁾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6조⁶⁾는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4) 「자동차관리법」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위임·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5.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5)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자동차관리법」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7.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법 제80조제5호⁷⁾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차 수리를 하는 경우 소비자는 신속하게 수리가 가능한 지역 정비업체보다 대기기간이 발생하더라도 자동차제작사가 운영하는 직영서비스센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제작사의 직영서비스센터에 일감이 몰려 중소 정비업체와 일감나누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소모품 교환 등 단순 요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경우 가맹본부 대신 가맹점을 이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대기업인 경우 중소기업⁸⁾을 이용하

7) 「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도록 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같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향상을 위하여 가맹점을 이용하도록 권유하는 경우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이용하도록 권유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업자가 이용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제작사가 보유한 고급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정비는 중소 정비업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대형 정비업체와 중소 정비업체 간 일감나누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우선,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동차제작자의 직영서비스센터나 가맹본부의 서비스를 선호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가 이용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다음으로, 일부 업계에서는 개정안의 효과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일감 나누기로 집중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가맹점 중에서도 특정 가맹점으로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는 중소정비업체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함.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가맹사업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상호의존적 사업방식으로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개별적인 이익보호와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한 전체적인 가맹조직의 유지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⁹⁾

9)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7484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

또한, 현재 자동차제작사이면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¹⁰⁾에 따른 대기업은 5개 기업이며, 이 중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기업은 2개 기업이 해당하고 있어 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대기업인 자동차정비업자 현황 및 가맹점 운영여부 >

구분	상 호	가맹점 운영여부	직영 정비소	협력 거래업체 (중소기업)
1	현대자동차(주)	○	22(가맹본부)	1,282(가맹점)
2	기아자동차(주)	○	18(가맹본부)	771(가맹점)
3	한국지엠(주)	X	9	389
4	르노자동차코리아(주)	X	8	377
5	KG모빌리티(주)	X	2	317

주. 2024년 8월 기준
자료 : 국토교통부

한편, 제21대국회에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6344호)이 발의되었으나 2021년 3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상정된 이후 추가 논의 없이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다. 정부 및 관련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이용자의 편의 제고 및 일감나누기를 통한 대기업과 중소 정비업체의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법령에서 정한 정비사업자의 작업범위에 속하는 항목임에도 이용자의 수리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당초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개정 취지와 배치됨.

2)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정비사업장의 근로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 또한, 법 개정 시 자동차제작사는 이용자의 대기시간 및 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일감나누기에 동참하고 정비업무 감소에 따른 고난이도 정비·점검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음.

3)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직영사업장의 포화로 정비가 지체될 경우 이용자는 현재 다수의 정비업체를 선택할 수 있으나, 개정안의 경우 제작사가 안내하는 가맹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제작사 직영 정비사업장에서 정비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불편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동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사와 대기업에게만 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종의 특혜이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크게 훼손하므로 법 개정 반대함.

4) 한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거부하고 타 업체로 안내를 하도록 하면, 자사 가맹점으로만 이동을 권유하는 것이 자명하여 일반 정비업체에 전부를 대상으로 일감이 분배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제작사 직영서비스센터와 특정 가맹점과의 일감몰아주기의 갑질과 이권을 이용한 부정한 거래의 부작용이 예상됨.

기존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비교적 높은 수리비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작사의 서비스센터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정비서비스를 거부하여 일반정비업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가 필요함

특히, 보증기간내 고장발생시 제작사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보증’ 판단 이전에 제작사의 보증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문 의 처
02)6788-5582